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6호(號) 1927(昭和 2)년 8월 5일 金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50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104호(號)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[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] 제10조(條) 및 제11조(條) 중(中) 「보통운임(普通運賃)을 철도국선(鐵道局線) 내(內) 4할(割), 조철선(朝鐵線) 내(內) 5할(割) 저감(低減)함으로 함」을 「각(各) 선(線) 통틀어 보통운임(普通運賃)을 4할(割) 저감(低減)함으로 함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5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